

재심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재심 2015-3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최삼규

주문

국민일보 2015년 3월 3일자 29면 「봉은사, 대표적 친일 사찰이었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886차 회의(4월 8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2015-1084호)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국민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친일인명사전’은 2009년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집이며, ‘친일승려 108인’은 2005년 임혜봉이 펴낸 단행본이다. 두 책자가 발간된 것은 6~10년 전이다. 국민일보는 이미 공개된 지 오래인 이들 책자의 내용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마치 취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국민일보 취재결과 밝혀졌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하기 어렵다.

〈해명〉

한국교회는 3·1운동을 이끈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민족의 독립운동에 적극 동참해 온 종교입니다. 그러나 일제 말 가혹한 탄압 앞에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신사참배 결의를 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교단폐쇄까지 당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등에 소속된 많은 신도들이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일부 교단의 오점에 대해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하며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게 대체적 분위기입니다(자료 1). 그렇다보니 불교나 천주교 등 타종교의 친일행적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타종교의 친일에 대한

* 163쪽, 제2015-1084호 참고

역사적 비판을 공론화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친일승려 108인’과 같은 불교 전문 역사서는 기독교인에게 매우 생소한 책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국민일보 취재결과 밝혀졌다’는 표현은 한국교회 입장에서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취재 내용, 기사의 사실성이지 관례적 표현에 있지 않습니다. 봉은사역 논란과 관련된 일련의 취재과정에서 기독교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불교 전문서적을 입수하게 됐고, 책자와 부수적 자료를 추가로 입수했기 때문에 ‘취재결과 밝혀졌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사의 표현은 객관적 사실을 벗어난 표현은 아닙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하기 어렵다’는 귀 단체의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2) 기사 작성 시 인용한 ‘친일인명사전’ ‘친일승려 108인’에 수록된 일부 인사의 친일행위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던 점으로 미뤄 두 책자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해명〉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발간한 ‘조선총독부관보 불교관련 자료집- 일제강점기 불교정책과 현황’(자료 2)에 기술돼 있듯이 조선총독부는 불교계를 포섭·통제하기 위해 1911년 사찰령을 제정하고 31개 본산을 중심으로 1500개 사찰, 7000여명의 승려를 통제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광주, 시흥, 고양, 여주, 이천 등지의 82개 사찰과 암자를 관리하는 봉은사 주지는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없이는 취임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사찰령시행규칙 제2조에서 ‘아래에 기재한 사찰 주지의 취직은 조선총독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얻어야 함’ 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상 사찰 중 1순위는 봉은사가 등재될 정도로 봉은사는 비중이 높은 사찰이었습니다.

심지어 기사에 등장하는 봉은사 주지 4명은 조선총독부의 사찰령 규정대로 취임 연도, 사망연도까지 기록해야 할 정도였습니다(자료 3). 따라서 31개 본

산 중 최선봉에 있었던 봉은사 주지는 조선총독부가 요구하는 전승기원법회, 국방비 헌납 등 부일협력행위를 거부할 수 었는 위치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봉은사 주지 4명은 창씨개명을 했으며(자료 4,5), 일제 총독 통역, ‘조선 민중을 일제 통치에 협력하도록 순화시킨다’는 목적 아래 진행된 심전개발사업촉진발기대회(자료 6), 중일전쟁의 승리를 위한 국위선양무운장구기원제, 일본군 위문금 제출, 일본군 전몰장병 충혼위령제 및 수록제, 중일전쟁 4주년 기념법회 개최 등 일제 부역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일제 강점기 불교계의 유일한 신문인 ‘불교시보’에도 기술돼 있습니다(자료 7~17).

귀 단체는 이런 내용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다수 있으며, 불교계는 중진이나 원로급들과 친일인사들 간 관련성 때문에 객관적인 친일연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자료 18).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봉은사의 친일행적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3) 게다가 이들 승려들의 친일 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으로서 한 행위인지 봉은사가 사찰 차원에서 한 행위인지에 대한 규명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사는 봉은사가 ‘대표적 친일 사찰’이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해명〉

사찰의 대표는 주지 승려이며, 신도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영적 가치를 제공하는 주지 승려의 지시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주지 승려-사찰-신도, 목사-교회-성도의 관계는 긴밀하며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종교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지 승려 혼자서 중일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법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철계류를 수집하거나 거액의 성금을 쾌척할 수 없습니다. 친일행위는 주지 승려가 주도해 신도들이 적극 동참했으며, 사찰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봉은사라는 개념은 주지 승려, 사찰, 신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4) ‘친일’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약탈 정책을 지지·옹호하여 추종함’을 뜻한다. 한국 사회에서 특징인 또는 특정 단체를 ‘친일’로 지칭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볼 수 있는 매우 부정적 단어이다.

따라서 비판의 대상이 된 봉은사측으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국민일보는 이를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해명〉

봉은사 주지 4명은 친일을 하지 않고는 취임할 수 없는 요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귀 단체가 인용한 친일의 정의대로 4명의 주지 승려는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약탈 정책을 지지·옹호하여 추종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불교계 신문에서도 ‘31본산 주지 스님 등 당시 불교계 중심 세력들은 창씨개명에 앞장서는가 하면 각종 시국연설회에 참가해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참가할 것을 종용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봉은사 주지는 식민 통치의 원흉인 일본 천황을 만나는 등 일제를 정당화 하는 활동을 펼쳐 불교계 언론에서조차 친일이라고 명시하고 친일 청산을 통해 민족종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입니다(자료 19~20). 봉은사역명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친일의 문제점을 밝히지 않는다면 오히려 언론의 윤리, 신문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봉은사의 해명이나 반론을 게재하는 것도 고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을 게재했을 경우 추후 답변에 대한 또 다른 반박 기사가 게재돼 종교간 갈등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감정적 문제는 차단하는 차원에서 역사적 사실만 나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친일까지 역사성에 포함시킨 서울시의 실책을 지적하는 선에서 기사를 마무리 한 것입니다.

국민일보는 위와 같은 사유로 귀 단체의 주의통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해명자료를 참고하시어 재심해주시길 요청합니다.』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국민일보는 위 재심 청구 사유에서 ‘친일승려 108인’과 같은 불교 전문 역사서는 기독교인이나 기독교계에는 매우 생소한 책이며, 이런 배경에서 ‘국민일보 취재결과 밝혀졌다’라는 표현은 한국교회 입장에서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취재 내용, 기사의 사실성이지 관례적 표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 불교 전문 역사서는 기독교인이나 기독교계에는 매우 생소한 책’이나 ‘한국교회 입장에서 새로운 사실’이라는 주장은 국민일보가 ‘기독교인’ ‘기독교계’ ‘한국교회’를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국민일보의 주장일 뿐이다.

또 윤리위원회는 이 기사를 심의함에 있어 기독교인이나 기독교계, 한국교회의 입장이나 관점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 국민일보는 발간된 지 6~10년이나 지난 책자의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마치 취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국민일보 취재결과 밝혀졌다’고 보도했는데, 윤리위는 이 같이 기술하는 것은 언론사가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취재 보도의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2) 국민일보는 청구 사유에서 봉은사 주지 4명의 친일 행위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다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봉은사의 친일행적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봉은사 주지 4명의 친일 행위에 대해 진위 논란이 있다거나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친일인명사전’과 ‘친일승려 108인’ 등 두 책자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실제 두 책자에 수록된 내용과 관련해 법정소송까지 벌어졌던 일은 당시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게다가 기사의 주 내용이 특정인의 친일행적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사자나 가족, 또는 관계자로서는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고 반론의 소지도 있을 것이다. 윤리위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자료를 인용해 기사화할 경우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사실 여부를 다시 검증하고 관점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등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3) 국민일보는 청구 사유에서 윤리위가 ‘이들 승려들의 친일 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으로서 한 행위인지 봉은사가 사찰 차원에서 한 행위인지에 대한 규명도 하지 않은 채 봉은사가 ‘대표적 친일 사찰’이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에 대해, 불교에서 주지-사찰-신도의 관계는 긴밀하여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종교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일행위는 주지 승려가 주도해 신도들이 적극 동참했으며, 사찰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일제 강점기 봉은사 주지로 재직했던 승려 4명의 친일행적을 나열하고, 이를 근거로 ‘봉은사가 일제 식민통치를 정당화한 대표적 친일 공간’이라고 기술했다.

4명의 주지 중 강성인, 홍태욱과 관련된 부분은 봉은사에서 각종 친일 행사를 개최했다는 내용이다. 나청호, 김상숙과 관련된 부분은 ‘1914년 일본 왕비인 쇼켄의 추모식을 개최’ ‘1917년 일본 시찰 때 일왕을 요배’ ‘테라우치 마사타케를 직접 찾아가 선물을 주는’ ‘테라우치 등 일제 핵심인사의 통역’ 등이다. 이 중 봉은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1914년 일본 왕비인 쇼켄의 추모식을 개최’했다는 부분이며, 다른 친일 행위들은 봉은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윤리위는 나청호, 김상숙의 경우 친일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으로 한 행위인지 봉은사가 사찰 차원에서 한 행위인지 분명치 않다고 본 것이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나 규명이 없이 봉은사가 ‘대표적 친일 사찰’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국민일보는 주지-사찰-신도는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종교적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사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윤리위가 기사를 심의함에 있어 고려할 점도 아니다.

4) 국민일보의 청구 사유에서 봉은사의 반론을 게재했을 경우 또 다른 반박 기사가 게재돼 종교간 갈등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어 감정적 문제는 사전에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역사적 사실만 나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는 『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도 청구 사유에서 ‘내부적으로 봉은사의 해명이나 반론을 게재하는 것도 고려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스스로 해명이나 반론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

위 기사는 봉은사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봉은사 측의 반론을 해당 기사에 반영하는 것이 보도의 기본원칙이며, 따라서 국민일보의 주장은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유로 윤리위원회의 제2015-1084호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민일보의 위 재심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심 2015-4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일보 발행인 한국선

주문

경북일보 2015년 6월 4일자 1면 「드디어 터졌다」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889차 회의(7월 8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제2015-1199호)을 ‘취소’ 한다.

이유

1. 경북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 456쪽, 제2015-1199호 참고

『경북일보 6월 4일자 1면 「드디어 터졌다」 제목의 사진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연합뉴스 전송 사진을 트리밍을 해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결정을 내렸지만, 문제의 사진에는 ‘연합’이라고 출처 표시를 했으니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 위 재심 청구 사유와 관련하여 윤리위원회는 문제의 사진 설명 끝부분에서 ‘연합’ 표기를 확인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